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7. 26 선고 2021가단7580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26. Z

27. AA

28. AB

29. AC

30. AD

31. AE

32. AF

33. AG

34. AH

35. AI

36. AJ

37. AK

38. AL

39. AM

40. AN

41. AO

42. AP

43. AQ

44. AR

45. AS

46. 주식회사 AT

47. AU

48. AV

49. AW

50. AX

51. 주식회사 AY

52. AZ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형제

담당변호사 기세운, 문병욱

피 고 1. BA 유한회사

2. 주식회사 BB

3. BC

피고 1,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장

담당변호사 차민철

피고 1, 3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명일

변 론 종 결 2023. 1. 25.

판 결 선 고 2023. 7. 26.

주 문

1. 피고들과 BD 주식회사(대표이사 BE)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관하여 2019. 8. 19.

체결된 변제이행합의약정을 취소한다.

2. 원고 E, 주식회사 AT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E, 주식회사 AT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E, 주식회사 AT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E, 주식회사 AT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 E, 주식회사 AT(이하 ‘AT’라 한다)도 동일한 청구를 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중 별지 3 표 ‘호실’란 기재 원고별 해당 객실의 소유자들로, 2018. 10.경까지 B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들이 소유하는 위 해당 객실을 소외 회사에 임대하되 소외 회사는 이를 호텔로 운영하면서 원고들의 최초 분양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임대료로 하여 이를 월할 계산한 금액을 매월 25일에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별지 3 표 ‘미지급 차임’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차임을 미지급하자(이하 ‘이 사건 차임 채권’이라 하고, 그 중 2019. 2.분 차임 채권을 ‘이 사건 2019. 2.분 차임 채권’이라 한다),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20가합10405호로 이 사건 차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0. 9. 10. 위 법원으로부터 그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9. 26. 확정되었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기한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피고	차용일	차용금액(원)	변제기	이자
BA 유한회사	2019.3.9.	100,000,000	2019.12.31.	연 12% (지체시 연 24%)
	2019.6.25.	50,000,000	2019.12.31.	
주식회사 BB	2019.5.17.	200,000,000	2019.8.17.	
BC	2019.3.8.	100,000,000	2019.8.6.까지 30,000,000원, 2019.10.13.까지 110,000,000원	
	2019.3.10.	40,000,000		

라. 소외 회사는 2019. 8. 19.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호텔 운영에 사용되는 집기, 비품인 별지 1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A 유한회사(이하 ‘BA’이라 한다), BC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A, BC은, 이 사건 유체동산이 전전양도되어 현재 주식회사 BF가 이를 소유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원상회복청구는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약정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함에 있어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의 권리보호 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위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원고 E, AT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 체결 이전에 위 원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2019.

2.분 차임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

나) 피고 BA, BC은, 소외 회사가 위 원고들에게 2019. 2.분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사실을 오인하여 2019. 2.분 차임의 지급을 명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은 2022. 5. 23. 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하여 위 채권의 존재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려면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확정된 이 사건 선행판결의 사실 인정을 배척하고 위 판결에서 그 존재가 인정된 이 사건 2019. 2.분 차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 BA, BC은,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선행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피보전채권 일부를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나, 을나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고 E, AT

위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2019. 2.분 차임 채권이 인정된 바 없고, 달리 이 사건 약정 체결 이전에 위 원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미지급 차임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다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 체결일인 2019. 8. 19. 이전에 위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임대위탁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이미 매월 발생할 차임 채권의 기초적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약정 체결일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2019. 10. 25.경(2019. 9.분)부터 소외 회사가 위 원고들에 대한 차임을 지속적으로 미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의 2019. 9.~11.분 차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만, 위 원고들이 이 사건 2019. 2.분 차임 채권만을 피보전채권으로 특정하여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의 여수세무서장, 여수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소외 회사는 2018.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 329,760,622원, 부채총계 522,067,901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자산 중 비품 등 유형자산의 가액은 101,240,160원이고, 그 외에는 외상매출금, 미수금, 선급금 등 유동자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② 소외 회사는 2019.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 900,600,050원, 부채총계 2,059,879,620원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자산 중 비품 등 유형자산의 가액은

345,860,714원이고, 그 외에는 외상매출금, 미수금, 선금금, 보증금 등 채권 형태의 자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③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④ 2018. 12. 31. 및 2019. 12. 31.에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던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약정 체결일인 2019. 8. 19. 무렵에 일시적으로 그 자력을 회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약정 체결 무렵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유체동산을 채권자 중 일부인 피고들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행위는 원고들(원고 E, AT 제외, 이하 같다)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의 이 사건 약정의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B은 2020. 8. 10.부터 2020. 9. 26.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의 피고 BB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BE으로부터 채권 원금 전액을 변제받고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하였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약정이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 BA, BC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 BB은 BE으로부터 그 채권 원금 전액을 변제받고 BE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는 것이므로, 피고 B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BA, BC의 선의 항변

피고 BA, BC은,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소외 회사의 재산상태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위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약정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 위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위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를 일시에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소외 회사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위
피고들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 취소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2019. 8. 19.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BA, BC은,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가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만약 이 사건 유체동산의 가액 합계가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액(74,440,19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넘는다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약정의 전부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유체동산 외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한 책임재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확정된 원고들(원고 E, AT 포함)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차임 채권은 총
287,569,925원에 달하고, 소외 회사의 2019.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 부채총계가
2,059,879,620원으로 원고들 외에도 다수의 채권자들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사건
유체동산이 소외 회사에 원상회복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다면 적어도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한 이 사건 2019. 2.분 차임 채권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차임 채권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할 것이 분명한데, 위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피고들로부터
49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을 매수하였다는 것인바, 약 4년간 사용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시가는 원고들의 이 사건 차임 채권 총액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유체동산은 이 사건 호텔 운영을 위하여 일체로 사용되는 집기, 비품이고, 피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별개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유체동산 전부에 관하여 아무런 구분 없이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되었다.

③ 위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중고 물품인 이 사건 유체동산의 가치가 매우 낮아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고, 피고들의 채권액별로 이 사건 유체동산을 구분하거나 개별 유체동산의 가액을 산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이를 일체로 양도받았다는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E, AT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 E, AT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금선

(별지 1)

유채동산 목록

1. 장소 : 전남 여수시 , 호텔

[illegible]

주방 및 연회장(홀) 내 자산목록

품 명	19층 수영장	18층 주방/홀	18층 플루오/ 2층 거북선홀	지하 2층 직원식당/창고	합 계
테이블 냉장		2		1	3
더블 냉장고		1		1	2
냉장고(리셀르)		1			1
업소용냉장고(무엇)		2		2	4
아이스크림기계				1	1
이동식선반				1	1
살균소독기		1			1
도마세척기		1			1
튀김기		1			1
우성,FLEXI오븐기		2			2
가스레인지(2구)		1			1
반찬 냉장고		6		2	8
과일냉장고		1			1
커피머신	3	3	1		7
테이블 보온고		2			2
슬러워 머신		2			2
재빙기	1	1			2
전자레인지(삼성/대우)		2		1	3
가스레인지(3구)		2		1	3
가스국솥		2			2
가스가마솥		1			1
4단 식자재선반		5		4	9
12단 식자재선반				4	4
작업대 선반		2			2
보조대 선반		3			3
폐탈 세척대		2			2
식기세척기(조용파)		2		1	3
자동식기세척기				1	1

대형연소기		1			1
썬크대	1	3		2	6
조리대		14		3	17
반찬 배식대	3			3	6
세미나 테이블		26			26
라운드 테이블		11			11
홀딩 테이블			10		10
라운드 크로스			25		25
세미나 크로스			53		53
대형 크로스			16		16
스커트			9		9
연단			2		2
스피커			2		2
마이크			2		2
아기의자			14		14
원형탁자			6		6
2인 식탁		24			24
홀테이블	14	24		8	46
회의자		168		32	200
의자			65		65
음향시스템 일체			1		1
음향시설	1				1
스피커(ATAKA)	3				3
노트북(싱크)			1		1
컵 소독기				1	1
밥솥		2		2	4
토스터기		2		1	3
3단 이동식 카트		3		1	4
컴퓨터			1		1
삼성복합기			1		1
모니터			2		2

로봇청소기	1				1
썬베드 세트	20	1			21
건조기		1			1
음뻘의자	13				13
접시(대)		575			575
접시(소)		37			37
양식스푼		324			324
한식스푼		223			223
젓가락		930			930
나이프		40			40
포크		319			319
물컵		476			476
커피잔		130			130
커피잔받침		60			60
티스푼(대,소)		85			85
배터나이프		57			57
스폰홀더		83			83
어린이 식기		50			50
도일리		186			186
라운드츠크레이(대)		7			7
라운드츠크레이(소)		9			9
사각츠크레이(대)		28			28
사각츠크레이(중,소)		26			26
냅킨홀더		46			46
카사세트(소금,후추)		46			46
삼단카드		4			4
사각바구니		18			18
유리컵(8oz)		300			300
컵랙		8			8
세미나 테이블(하프)		26			26
라운드 테이블		11			11

홀딩 테이블		10			10
홀딩 하프		3			3
라운드 크로스		25			25
세미나 크로스		53			53
대형 크로스		16			16
스키트		9			9
면단		2			2
엠프		6			6
마이크		4			4
식당의자		148			148
4인 테이블		23			23
2인 테이블		21			21
2인 원형테이블		3			3
아기의자		14			14
토스트부스타(대)		1			1
토스트부스타(소)		1			1

운영사 사무실 내 자산목록

[illegible]

선통기								13			
사무용(ㄱ)책상				1			2				
사무용 책상					4	3					
대형책상				1	1		1				
원형탁자							1				
분쇄기							1				
냉장고							1				
책장(대)	1			3	2						
금고							1				
이동카드					6						
객실의사					9						
객실테이블					2						
진공청소기											14
쇼파테이블				1							
쇼파				7							
신발장							2				
개인케비넷							26				
선통기					1	1					13

기계실 내 자산 목록

분 명	규 격	수 량	용 도
지하저수조	11M X 7M X 3.5M	1	시수 및 소방용수
급탕저장탱크	Ø2.18M X 2.44M	2	객실 온수용
소방 MCC판넬	자동 / 수동	1	층압펌프, 스프링클러, 소화전펌프 제어용
기계 MCC판넬	자동 / 수동	1	급기/배기팬, 급수/배수펌프, 상수도, 지하수 제어용
소방 층압펌프	B2	1	압력 체크용
소방 주/매비 펌프	B2	2	옥내소화전펌프
소방 스프링클러 펌프	B2	2	지상11층 까지 스프링클러 작동용
급수펌프	B2	3	시수 공급
B1층 주차장 배수펌프	B2	2	지하1층 집수정용
B2층 기계실 배수펌프	B2	2	지하2층 집수정용
환탕(온수순환)펌프	B2	2	객실 온수 공급용
B1층 오수펌프	B2	2	오수 처리용
B2층 오수펌프	B2	1	오수 처리용
전기실 급/배기팬	B2	1	외부 공기 순환용
발전기실 급/배기팬	B2	1	외부 공기 순환용
기계실 급/배기팬	B2	2	외부 공기 순환용
B2층 급/배기팬	B2	2	외부 공기 순환용

전기실(발전기실 포함) 내 자산 목록

품 명	규 격	수 량	용 도
변압기 #1	1250 KVA	1	냉난방설비용
변압기 #2	700 KVA	1	객실 전등, 전열 용
변압기 #3	600 KVA	1	공용부 전등, 전열 용
부하개폐기(LBS)	파괴기(LA)포함	1	한전 개폐용
전력수급용계기용변성기 (MOF)	MOF / B2	1	유효, 무효 전력량 표시 (전기요금 확인)
계기용변성기 (PT)	PT / B2	1	특고압을 저압으로 변성
진공차단기 (VCB)	VCB / B2	1	특고압 고장전류 차단
기중차단기 (ACB)	ACB / B2	3	저압 고장전류 차단
배선용차단기(MCCB)	MCCB / B2	3	저압 분배 차단기
자동전환개폐기 (ATS)	ATS / B2	1	상시전원 차단시 비상발전기로 자동절환스위치
비상발전기	500KVA /B2	1	비상전원용

방재실(수영장 관리 포함) 내 자산 목록

품 명	규 격	수 량	용 도
소방 R형 복합수신기	R형 / 1층	1	화재감지 및 경보발생
전광방송 시스템	1층	2	전층 화재경보 및 방송송출
승강기 제어시스템	1층	1	1~5호기 승강기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태양광 발전시스템	1층	1	태양광 발전현황 실시간 파악 및 제어
객실관리시스템	1층	1	객실 에어컨 상태 파악
공용부 냉난방 제어시스템	1층	1	B1,2층, 1,2층, 18층 전층복도 냉난방제어
공용부 조명제어 시스템	1층	1	B1,2층, 1,2층, 19층 전층복도 조명제어
CCTV시스템	1층	4	전층 CCTV 감시(카메라 111대)
위성 TV수신기	1층	10	공용 TV채널
PMS, 네트워크 시설	전층	1	통합결제 및 예약시스템 네트워크 일체
자동제어반	1층	1	급탕탱크, 지하저수조, 급배기팬, 배수펌프 제어
여과기	대	1	18층 수영장 여과용
여과기	소	1	자구찌 수영장 여과용
보일러	NPW-48KS	4	수영장 물 가열용
순환 펌프	PIL-8008D	1	수영장 물 순환용
온수 순환펌프	PM-600M	1	수영장 온수 공급용
자동 제어반	B2	1	물 보충, 자동 순환, 온수 자동 조절 제어
CL/FL/PH	약품투입기	3	수영장 각 약품 투입기
열 교환기	대 / 소	2	수영장 물 온도 조절용

린넨 물품 자산목록

품 명	규 격	합계
S시트		96
D 시트		310
K 시트		180
S 커버		139
D 커버		327
K 커버		80
FACE TOWEL		932
BATH TOWEL		682
BATH MAT		396
방수 패드 (S)		145
방수 패드 (D)		161
방수 패드 (K)		88
패드 (S)		130
패드 (D)		148
패드 (K)		74
이불솜(S)		163
이불솜(D)		159
이불솜(K)		86
차렷 이불		21
요 매트		15
요 커버		150
가운		25
필로우 케이스		476

(별지 2)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여수시 BG, BH에 있는 BI호텔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BJ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18층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지2층 1403.86㎡

지1층 1511.92㎡

1층 612.16㎡

2층 227.27㎡

3층 791.07㎡

4층 780.83㎡

5층 780.83㎡

6층 780.83㎡

7층 780.83㎡

8층 780.83㎡

9층 780.83㎡

10층 780.83㎡

11층 780.83㎡

12층 780.83㎡

13층 780.83㎡

14층 780.83㎡

15층 780.83㎡

16층 780.83㎡

17층 780.83m²

18층 817.4m²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전라남도 여수시 BG 대 1483.3m²
2. 전라남도 여수시 BH 대 737.3m²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BK 철근콘크리트구조 37.77m²

대지권의 표시

- 1, 2 소유권대지권 2220.6분의 10.574. 끝.

(별지 3)

순 번	원고	호실	미지급 차임	
			2019. 2.분	2019. 2. 및 9.~11.분 합계액
1	A	<삭제처리 >	1,323,512	4,972,848
2	B		1,323,512	4,972,848
3	C		1,323,512	4,972,848
4	D		1,323,512	4,972,848
5	E		0	3,649,336
6	F		1,323,512	4,972,848
7	G		2,647,024	9,945,696
8	H		1,323,512	4,972,848
9	I		1,323,512	4,972,848
10	J		1,323,512	4,972,848
11	K		1,323,512	4,972,848
12	L		1,323,512	4,972,848
13	M		2,647,024	9,945,696
14	N		1,323,512	4,972,848
15	O		1,323,512	4,972,848
16	P		1,323,512	4,972,848
17	Q		1,323,512	4,972,848
18	R		1,323,512	4,972,848
19	S		1,352,923	5,090,492
20	T		1,352,923	5,090,492
21	U		1,352,923	5,090,492
22	V		2,705,846	10,180,984
23	W		1,352,923	5,090,492
24	X		1,352,923	5,090,492
25	Y		1,352,923	5,090,492
26	Z		1,352,923	5,090,492
27	AA		1,352,923	5,090,492

순 번	원고	호실	미지급 차임	
			2019. 2.분	2019. 2. 및 9.~11.분 합계액
28	AB	<삭제처리 >	1,352,923	5,090,492
29	AC		1,352,923	5,090,492
30	AD		1,352,923	5,090,492
31	AE		1,352,923	5,090,492
32	AF		1,352,923	5,090,492
33	AG		1,352,923	5,090,492
34	AH		1,382,335	5,208,140
35	AI		2,764,670	10,416,280
36	AJ		1,382,335	5,208,140
37	AK		1,382,335	5,208,140
38	AL		1,382,335	5,208,140
39	AM		1,382,335	5,208,140
40	AN		1,382,335	5,208,140
41	AO		1,382,335	5,208,140
42	AP		1,382,335	5,208,140
43	AQ		1,382,335	5,208,140
44	AR		1,382,335	5,208,140
45	AS		2,764,670	10,416,280
46	주식회사 AT		0	3,825,805
47	AU		1,382,335	5,208,140
48	AV		1,382,335	5,208,140
49	AW		1,382,335	5,208,140
50	AX		1,382,335	5,208,140
51	주식회사 AY		1,382,335	5,208,140
52	AZ		1,382,335	5,208,140
합계			74,440,196	287,569,925

